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6-13호
2026. 3. 6.(금)

차 례

고 시(2)

- 도로면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6-19호) 1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26-20호) 2

공 고(6)

- 2026년 1분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공고 제2026-275호) 5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292호) 9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295호) ... 11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300호) 13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301호) 15
- 장동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공고 제2026-303호) 17

공 략									
-----	--	--	--	--	--	--	--	--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신일동 1690-16	신일서로104번길 20(신일동)	신축	신일서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1, 040m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 되는도로	2025. 02. 25.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http://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상서동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상서동 일원

나. 면 적 : 134,963㎡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대덕구 신일동, 상서동 일원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장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 및 투기 방지

3.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

가.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나. 제한제외 대상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이 접수된 행위로서 종래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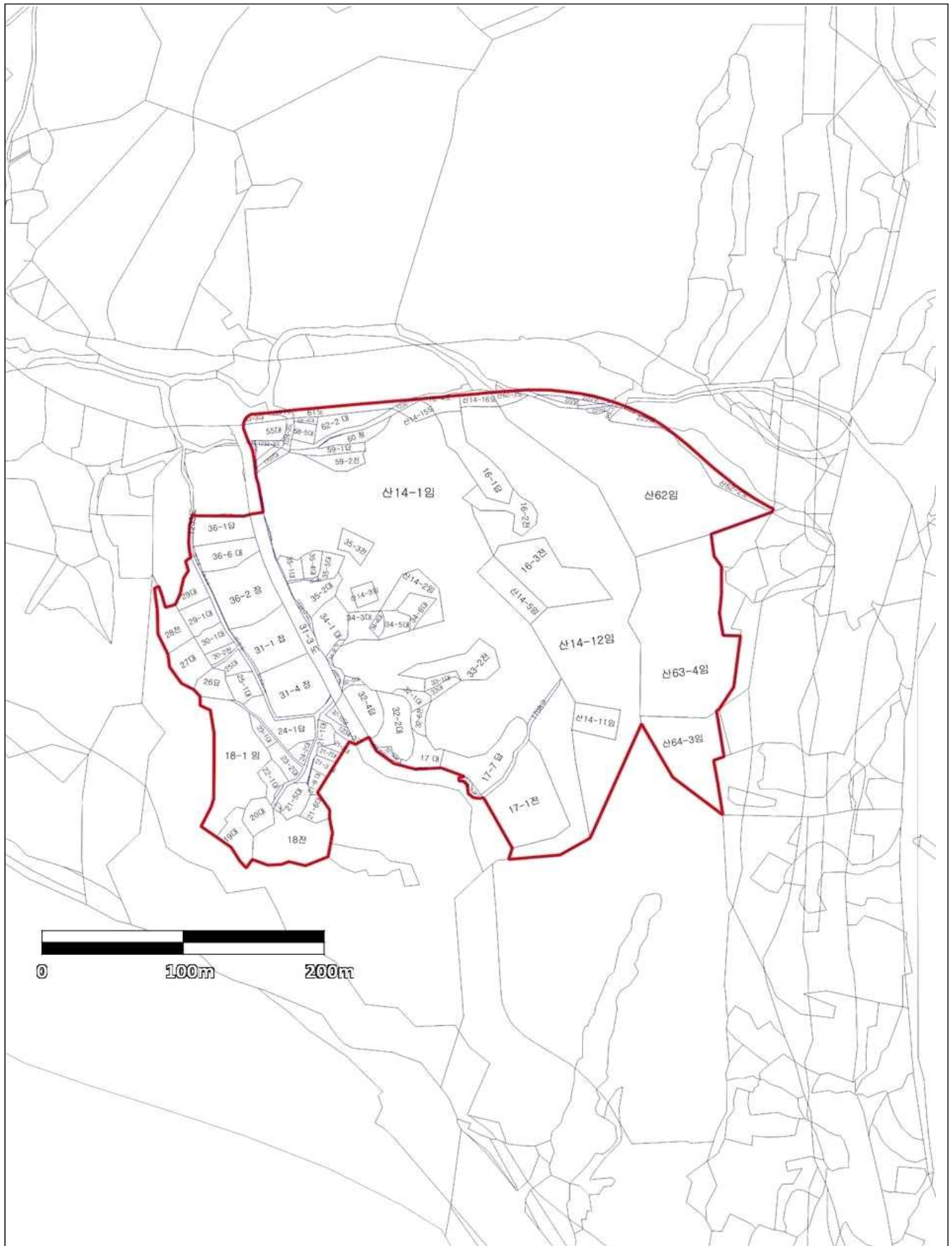
-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까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 그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4. 제한 기간 : 2026. 3. 7. ~ 2029. 3. 7.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관계도면: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신일지구 편입용지도



2026년 1분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신청기간: 2026. 3. 9.(월) 09:00 ~ 2026. 3. 31.(화) 18:00
2. 신청대상: 착한가격메뉴*가 대덕구 평균가격** 이하인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
** 인근 상권을 기준으로 산정(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가격동향 참고)

[신청 제한]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공고일 기준)**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3. 신청방법: 방문(점심시간 12:00 ~ 13:00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또는 이메일 접수
가. (방문 접수) 대덕구청 별관 2층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나. (이메일 접수) whdaud1008@korea.kr
※ 이메일 신청 시 접수확인 전화 필수(☎ 042-608-6925)

4. 구비서류

- 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1】
-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5. 지정기준

가 격 (25점)	착한가격메뉴*가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
위 생 청 결 (25점)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의 위생 및 청결 수준
가 점 (3 점)	지역화폐가맹점 여부, 지역사회 공헌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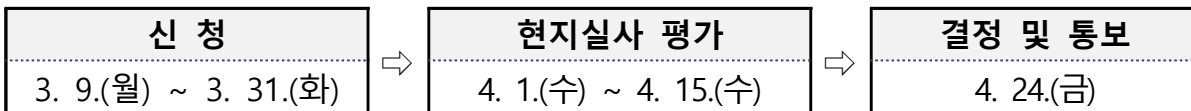
➔ 점검표 기준 평점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 단,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지정 할 수 있음

6. 지정혜택

- 가.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공 / 대전광역시
- 나. 행정안전부·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업소 홍보
- 다. 물가안정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운영물품 또는 운영비) 지급

7. 지정절차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경제과 경제팀(☎ 042-608-6925)으로 문의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3. 6. ~ 3. 31. (25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 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4. 15.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4. 3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농생명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2026. 4. 30.)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마.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6. ~ 2026. 3. 20.(14일간)
3. 공고대상: 별첨
4. 공시송달내용
 - 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환경과(☎042-608-686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가산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아울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과(☎ 042-608-6864)

[별첨1]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반송사유
정*덕	88다64**	충북 옥천군 청산면 법화3길 8*-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0	폐문부재
(주)삼*	86루50**	충남 부여군 부여읍 대울로1*4번길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부재
(주)성*	97다64**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927번길 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수취인불명
박*만	02두40**	경남 김해시 관동로27번길 1*3-1(관동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폐문부재
(주)대*토건	43우45*5	대전시 대덕구 동춘당로44번길 1*, *02호(송촌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	폐문부재
합자회사 대*환경	80마14**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제6*8호(관평동, 한신*스메카아파트형공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수취인불명
박*호	82모69**	세종시 시청대로642, 90*동 1*03호(집현동, 새나루마을9단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수취인불명
주식회사 동*개발	21루46**	대전시 서구 복수동로87번길 35-25, 20*호 (복수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위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0,000	수취인불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3. 6. ~ 2026. 3. 20.(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3.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위반자명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일반음식점	맛나식당	최*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29번길 46, 1층 (중리동)	2024년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100,000원

4. 고지사항

- 가. 1)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의견제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덕구 위생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위 공고 대상자는 대덕구 위생과 위생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6902.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3. 6. ~ 2026. 3. 20.(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3.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위반자명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일 반 음식점	솔라식당	정*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4번길 21-12, 1층 (송촌동)	2023, 2024년도 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2건 부과 200,000원 (별건 1건당 100,000원)

4. 고지사항

- 가. 1) 공고기간 경과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의견제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서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덕구 위생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위 공고 대상자는 대덕구 위생과 위생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대전 대덕구청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6902. 끝.

장동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및 실시계획수립 내용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주민설명회 개최목적

- 지적재조사사업 안내 및 주민의견 청취, 사업홍보 등

2. 주민설명회 일시: 2026. 4. 1.(수) 15:00

3. 주민설명회 장소: 장동주민문화센터 3층 소강당 (대덕구 산디로15번길 63)

4. 실시계획 개요

- 사업명: 장동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71-2번지 일원 (195필지 / 279,324㎡)
- 공고기간: 2026년 2월 6일 ~ 2026년 5월 6일(공고일로부터 90일)
-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사업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
- 사업예산: 50,676천원(국비)

5. 기타사항

가. 설명내용: 사업목적 및 추진절차, 경계설정 방법, 조정금 산정 등

나. 기타문의 사항은 대덕구 토지정보과(☎042-608-5972, 5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